

<p>공인의 등록,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시보에 공고토록 하여 널리 알려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자 함. 공고규정은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음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      5. 토론요지 : 없음     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    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     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   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</p> <p>별표 제2호 분야별 수수료의 「수수료 징수대상 사무」 중 “마. 석유판매업 등록(1종)”을 “마. 석유판매업 등록(2종)”으로 하고, 마목의 “(1)일반대리점·용체대리점”란 다음에 “(2)부생연료유판매소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수수료 징수대상사무</th><th style="width: 15%;">단위</th><th style="width: 30%;">금액</th><th style="width: 25%;">근거법령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2) 부생연료유판매소</td><td>1건</td><td>20,000원</td><td>석유사업법 제31조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  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5조(공공시설의 위탁관리)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    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84조의 2의 규정</p>	수수료 징수대상사무	단위	금액	근거법령	(2) 부생연료유판매소	1건	20,000원	석유사업법 제31조	<p>에 의한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</p> <p>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제3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“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”의 확정사항</li> <li>3. 행정·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,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⑪제3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</li> <li>2.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</li> <li>3. 대장가액 1천만 원 이하(특별시·광역시 지역은 3천만 원 이하)의 재산 취득·처분</li> <li>4.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·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</li> </ol>
수수료 징수대상사무	단위	금액	근거법령						
(2) 부생연료유판매소	1건	20,000원	석유사업법 제31조						

<p>가. 특별시·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(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</p> <p>나. 일반 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</p> <p>다. 군지역(광역시의 군지역 포함)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</p>	<p>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</p> <p>④ 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
<p>제11조 제1항 중 "행정재산은"을 "행정재산·보존재산은"으로 하고,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.</p> <p>제12조의 제목 "(사용허가의 제한)"을 "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"으로 하고, 동조 제1항 중 "행정재산"을 "행정재산·보존재산"으로 하며, 동조 제2항 중 "행정재산"을 "행정재산·보존재산"으로, "사용허가"를 "사용수익허가"로 하고, 동조 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.</p> <p>제13조의 제목 "(사용허가 기간)"을 "(사용·수익허가 기간)"으로 하고, 동조 중 "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"을 "행정재산·보존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"으로, "사용허가"를 "사용·수익허가"로 한다.</p>	<p>제23조 제1항 중 "1000분의 50"을 "1000분의 50 이상"으로, "1000분의 25"를 "1000분의 25 이상"으로, "1000분의 40"을 "1000분의 40 이상"으로 하고, 동조 제2항 중 "1000분의 10"을 "1000분의 10 이상"으로 하며, 동조 제3항 제1호 중 "1000분의 10"을 "1000분의 10 이상"으로 하며, 동조 동항 제2호 중 "1000분의 50"을 "1000분의 50 이상"으로 하고, 동조 제4항 중 "1000분의 40"을 "1000분의 40 이상"으로 하며, 동조 제6항 중 "1000분의 25"를 "1000분의 25 이상"으로, "1000분의 15"를 "1000분의 15 이상"으로 "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"를 "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"로 하고, "1000분의 10"을 "1000분의 10 이상"으로 한다.</p>
<p>제15조의 제목 "(사용허가부의 비치)"를 "(사용·수익허가부의 비치)"로 하고, 동조 중 "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"를 "행정·보존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부"로 한다.</p>	<p>제23조의 2제2항을 삭제한다.</p>
<p>제20조의 2제3호 중 "제29조"를 "제2조"로 하며,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4.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</p>	<p>제23조의 3중 "사용허가"를 "사용·수익허가"로 하며 동조 제1호가 목 중 "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항"을 "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1항"으로 한다.</p>
<p>제22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, 동조 동항 제6호 중 "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"를 "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"로 하며, 동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,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7.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,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 사업용지,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, 지방자치단체가</p>	<p>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②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(공용면적을 포함한다)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.</p>
<p>제25조의 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25조의 2(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) ① 영 제100조의 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</p> <p>2.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(건물·기</p>	<p>1.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</p> <p>2.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(건물·기</p>

<p>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)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·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</li> <li>2.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</li> <li>3.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</li> </ol> <p>③제1항·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·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외현금으로 관리하되,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. 다만,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.</p> <p>⑤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·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p>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(이하 "전세자"라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료·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 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.</li> <li>2. 전세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간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.</li> </ol> <p>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6조(대부료 등의 납기) ①대부료 또는 사용</p>	<p>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,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·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.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②시장이 제23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28조의2(변상금의 청문등)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·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변상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39조제3항중 "하천법 제25조"를 "하천법 제33조"로 하고, 동조제5항제3호중 "(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등 잔여면적도 포함)"을 "(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포함)"으로 하며, 동조동항동호 단서중 "매각"을 "분할매각"으로 하며, 동조동항제4호를 삭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4.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</p>
--	--